

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의견진술 및 자진납부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[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의견진술 및 자진납부)]를 등기발송하였으나 ‘수취인불명’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08. 1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



- 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부과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(주)와이지건설 (현장명: 김해 삼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중 타일 및 코킹공사)	1801-11-093720-1	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(부전동,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) 1316호	이용권	2026. 2월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 1,000,000원 (자진납부시 800,000원)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※ 위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2026. 2월분 1,950,000원 미납

- 4. 공고기간: 2026. 08. 14. ~ 2026. 08. 28.(15일간)
- 5. 납부 등 문의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(담당: 하경주, 055-330-6465)